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동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28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0일

발 의 자: 김동욱 의원(1명)

찬 성 자: 경기문, 곽향기, 김경훈,
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춘선,
박환희, 신복자, 옥재은,
왕정순, 유만희, 이병윤,
이상욱, 이숙자, 이원형,
이희원, 임춘대, 최민규,
최유희, 허 훈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(일명 ‘민식이법’)이 마련되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.
-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하여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,
-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안내를 통하여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장치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전 지식과 보호장치를 바탕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장소에 통학로에서 도로교통법 제 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곳을 추가로 규정함 (안 제7조의3).

나. 어린이 안전교육에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와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(안 제8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로교통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제1항 중 “예상되는”을 “예상되거나 통학로에서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지도
3.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의3(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)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<u>예상되는</u>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8조(어린이 안전교육)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의3(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예상되거나 통학로에서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</u> --- 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어린이 안전교육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지도</u></p> <p>3. <u>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</u></p> <p>4.·5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

2023100600000006

비대상 사유서

요청인 : 김동욱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06.

회신일 : 2023.10.10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(어린이 안전교육)제2호 및 제3호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3년도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8조	교통홍보활동 (어린이 대상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)	224,670 (20,000)

자료: 2023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주 무 관 김지혜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

[붙임1] 2023년 교통홍보활동 사업설명서

□ 사업내용

○ 사업기간 : 2023. 1.1. ~ 12.31.

○ 사업수행주체 : 서울경찰청

○ 사업의 주요내용

- 어린이, 어르신, 이륜차(오토바이, 킥보드, 자전거 등) 택시, 버스,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 홍보물품제작
- 경찰서 어린이·어르신·이륜차·사업용 차량 현장 방문 교육·홍보 시 사용되는 홍보물품 제작 및 캠페인
- 교통사망사고 발생 지점에 현수막 설치 등 집중 홍보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교통사고 재발 방지
-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계도를 위한 전기 암행순찰차 2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지원